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년월일 : 1998.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시군의회의원의 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5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과 청주시 등의 통합, 인구수('98. 3. 31기준)의 증감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 하여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선거구 : 163 ⇒ 146 (△ 17)
- 의원정수 : 180 ⇒ 146 (△ 34)

### ※ 증감사유

- 읍면동통합 (△4)
  - 증(4) ⇒ 청주시(4) 수곡1·수곡2·중앙·성안동
  - 감(8) ⇒ 청주시(8) 수곡·영북2.북3가·문화북1.남2가·서운.남1가·서문·남주·석교·수동
- 인구 5,000이하동 (13)
  - 청주시(1) : 강서제2동
  - 충주시(5) : 성내.성남.성서·충인.충의·단월.풍.가주·용관.용두.달천·종민.안림.목벌동
  - 제천시(7) : 의림·중앙·남천동·두학·화산2·영천1·영천2동

· 2인선거구 ⇒ 1인선거구 (17)

- 청주시(10) : 우암 · 을량 · 사천 · 사창 · 모충 · 금천 · 운천 · 신봉 · 용암 · 용정 · 방서 · 수곡 · 복대제2 · 봉명제2 · 송정동
- 충주시(2) : 교현1 · 연수동
- 제천시(1) : 청전동
- 옥천군(1) : 옥천읍
- 영동군(1) : 영동읍
- 진천군(1) : 진천읍
- 괴산군(1) : 증평읍

의안전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관계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 정수)와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제3조(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의 선거구명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